Smiling Dalseo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대구광역시 달서구
http://www.dalseo.daegu.kr

[기획조정실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조정실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**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**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시행에 앞서 종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과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,

○ 전부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관계에 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
☐ **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○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에(안 제3조)

-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 위탁된 사무의 효력유지를 위한 경과조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.

☐ **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**

○ 본 조례안을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1년 4월 5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**

○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**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○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시행(2021. 7. 1.)되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,

○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**감사합니다.**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821040

제출년월일: 2021. 4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기획조정실장)

1. 개정이유

○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을 일부개정하여, 종전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과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부칙의 경과조치(안 제3조)

-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 위탁된 사무의 효력유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1. 3. 11.~3. 3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	부 칙
<신 설>	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.

【 관 계 법 령 】

☐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